

#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 1. 31(월)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1. 1. 13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11. 1. 13
- 라. 상정일자 : 2011. 1. 24 (제1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감사관 김장근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에 있어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제도 운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에 따라
- 신고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부조리신고를 활성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 조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 부조리 행위 신고를 인터넷,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3조)
-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금지, 협조자의 보호 등 보호 장치 강화를 신설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보상금 지급은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현금지급이 가능 하도록 하고, 지급심사·결정을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11조)
- 신고보상금 지급제외 대상 범위를 확대 신설함.(안 제1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 동 조례안은

-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에 있어 비밀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에 따라,
-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을 다양화하고,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화·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3조에 부조리 신고방법을 인터넷, 이메일, 우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다양화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신고자의 비밀,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를 금지토록 신설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으며,
- 안 제11조에 신고보상금 지급방법을 계좌입금 외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신고 보상금의 지급 심사·결정을 현행 「부조리 신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토록 하여,

한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부조리 신고 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다만, 2004년 이후 동 조례가 제정·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  
실적이 전무하므로,
- 신고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신변보호 조치에도 불구  
하고 신고자가 공개되었을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상 조치가 미흡한 바,  
신고자가 공개될시 보상 등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조례안 주요변경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 제출</li> <li>· 시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경우 우선 유선신고 후 서면(우편 포함)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li> </ul>	안 제3조
신고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 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 금지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강구</li> <li>· 신고자 인사상 불이익 금지</li> <li>· 신고자 신분보호 및 보복행위 금지</li> <li>· 신고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 신고내용 조사 협조자에 대한 보호</li> </ul>	안 제5조 ~ 안 제10조
보상금 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 원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 원칙</li> <li>·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현금 지급 가능</li> </ul>	안 제11조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 보상심의 위원회</li> <li>-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li> <li>-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li> <li>- 보상금 지급액의 규모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li> <li>-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li> <li>-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안 제11조
보상금 지급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범위내에서 별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최고 1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2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최고 1억 -별표내용 동일)</li> </ul>	안 제11조
지급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li> <li>· 감사원·사법기관 또는 시 감사부서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li> <li>·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 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li> <li>·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li> <li>·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li> <li>·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li> <li>·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li> <li>·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li> <li>· 그밖의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사항</li> </ul>	안 제12조

## 【시·도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현황】

연번	시·도	신고대상	신고자 보호내용	보 상 금 지급금액	위원회 설치	비고
1	서울	·업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의무불이행으로 市 재정손실	신고자의보호	· 최고 20억원 · 10배이내 · 별표기준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2	부산	·업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의무불이행으로 市 재정손실 ·알선청탁	신고자의보호	· 최고 10억원 · 5배이내 · 별표기준	보상심의위원회	
3	대구	·업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의무불이행으로 市 재정손실 ·알선청탁	신고자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금지 협조자보호	· 최고 5천만원 · 10배이내 · 예산범위내	시정조정위원회	
4	광주	·업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의무불이행으로 市 재정손실 ·알선청탁	신고자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신고	· 최고 1억원 · 20배이내 · 예산범위내	공직자윤리위원회	
5	경기	·업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지위이용 부당이익 ·알선청탁	신고자의보호	· 최고 30억원 · 10배이내 · 별표기준	공적심의위원회	
6	충북	·업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지위이용 부당이익 ·중대한 과실로 道 재정손실	신분보장 신고자의 보호 협조자의 보호	· 최고 2천만원 · 10배이내 · 별표기준	공적심의위원회	
7	충남	·업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중대한 과실로 道 재정손실	신고자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금지 협조자의 보호	· 최고 5천만원 · 10배이내 · 별표기준	-	자체심사
8	전북	·업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중대한 과실로 ·알선청탁	신고자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금지 협조자의 보호	· 최고 1천만원 · 10배이내 · 별표기준	보상심의위원회	
9	전남	·직 무관련 금품향응수수 · 道 재정 손 실 ·알 선·청 탁	신고자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금지 협조자의 보호	· 최고 1억원 · 20배이내 · 예산범위내	공직윤리위원회	
10	경북	·직 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알 선·청 탁 ·직 위 이용 부 당 이 익 ·위 법 중 대 한 과 실 로 재 정 손 실	신고자의 보호 협조자의 보호	· 최고 5천만원 · 3배이내 · 별표기준	도정조정위원회	
11	경남	·업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중대한 과실로 道 재정손실	신고자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금지 협조자의 보호	· 최고 1천만원 · 20배이내 · 예산범위내	경남부패방지 대책협의회	
12	제주	·업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중대한 과실로 道 재정손실	신분보장 신변보호 협조자의보호	· 최고 2천만원 · 10배이내 · 별표기준	감사위원회	

※ 대전, 울산, 강원도는 관련조례 미제정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 의 >

- 홍성욱, 신동수, 이재병, 전원기, 노현경, 차준택 위원
  - 타시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실적은 ?
  - 신변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공개되었을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상 조치가 미흡한 바, 신고자가 공개될시 보상 등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지 ?

##### < 답 변 >

- 김장근 감사관
  - 서울과 경기도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실적이 있는데, 서울 29건, 경기도 22건이 지급되었음.
  - 신고자가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음.

####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없음
- 나. 반 대 : 홍성욱, 신동수, 이재병, 전원기, 노현경, 차준택 위원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6명 : 찬성 6명)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 중 “제3의 장소에 방문·접수할 수 있다”를 “제3의 장소 및 시간에 방문·접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손해배상) 신고자 및 협조자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b>제3조(신고방법)</b>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시 감사관에게 한다.</p> <p>②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b>제3의 장소에 방문·접수할 수 있다.</b></p> <p>④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표 1의 서식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신 설〉</p>	<p><b>제3조(신고방법)</b>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b>제3의 장소 및 시간에 방문·접수하여야 한다.</b></p> <p>④ (개정안과 같음)</p> <p style="margin-top: 20px;"><b>제14조(손해배상)</b> 신고자 및 협조자는 <b>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b></p>



#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 소속 공무원과 시가 출자 및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재직기관 소속으로 본다.
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시 감사관에게 한다.

②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 및 시간에 방문·접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표 1의 서식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① 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관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신고보상금 등) ①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③ 신고보상금은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그 밖에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제13조(환수) 시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2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손해배상) 신고자 및 협조자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전화번호	
피 신고인 (부조리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증 병 서 류				
비 고				
<p>「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p>				

[별표 2]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제11조 관련)

1. 유형별 지급기준

구분	유 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1	조례 제2조제3호가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품) 수수액의 20배 이내</li> <li>·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li> </ul>
2	조례 제2조제3호나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 이내 단, 추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10% 이내 추가지급</li> <li>· 추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 이내 단, 사후 추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 이내 추가지급</li> </ul>
3	조례 제2조제3호다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20배 이내</li> <li>· 알선·청탁행위신고 : 100~200 만원</li> </ul>

2. 지급액의 상한액 기준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100백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